

환경부고시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에 대한 청원

검 토 보 고

1. 청 원 현 황

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 : 1995년 12월 6일 제95-3호

나. 청 원 인 : 옥천군 청성면 대안리 147-5 신한중외 1,308인

다. 소 개 의 원 : 유재철, 송재주, 이민희, 이희복 의원

라. 청 원 요 지

□ '90. 7. 19 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을 근거로 환경부고시(90-15) 16호에 의거 지정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권역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의 마련으로 주민의 피해의식(개발제한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대청호 건설로 인한 피해 상황(예 : 옥천군)

- 인구감소 (건설 당시 103,066명 → 현재 67,312명)
- 농지 면적 감소, 안개 일수 증가(년26.5 → 46.8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 골재 생산량 감소로 타 지역 골재 고가 구입
- 각종 쓰레기 증가로 환경오염 가중 - 전염병 확산

□ 수질보전특별대책을 지정 고시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법에 근거로 고시할 수 있으나 이번 환경부고시 개정안은 다른 법령을 초월한 초법적인 고시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근거를 두고 마련한 특별대책지역과 대책내용은 엄연히 위법으로 환경부고시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법성 여부와 '90년이후 지원상황 그리고 현행 고시의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임

마. 청 원 사 항

1.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고시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2.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에 따라 '90년도 수준으로 피해대책 지역에 연차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환경조성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된 내역을 밝히고, 지원되지 않았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것
3. 재산권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인 규제만 강요하는 현행 고시를 폐지하여 줄것을 요구

2. 검 토 의 견

가. 내 용 : 청원사항과 동일

나. 검 토 의 견

1.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고시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 대책의 위법성 여부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다를 사안이 아닌 것으로 국회 및 헌법기관등 관계기관에 청원인들이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본 청원 내용은 수용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에 따라 '90년도 수준으로 피해대책 지역에 연차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환경조성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된 내역을 밝혀주고, 지원되지 않았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을 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고시 제90-16호 (환경처)에 명시된 지원대책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기초시설설치,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의 3가지 사업으로 하는 것이며 재원의 조달은 '90년도의 재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 기금을 우선적으로 장기저리 융자토록 하는 것이며

추진 방법은 대청호의 국고지원사업은 충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익년도 예산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개발사업은 년차별로 확대함으로 되어 있는바

본 청원내용은 수용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내용과 관계부처와 협의 또는 건의했던 사항, 피해대책 지역에 지원된 국고지원금 책정 및 배정내역과, 배분실적을 밝히고 지역주민을 위해 보상기준에 충실한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공무원 신상에 관한 문제는 공무원법 및 기타 관계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재산권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인 규제만 강요하는 현행 고시를 폐지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인류 문명의 발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를 본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볼때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기득권적 부담원칙, 개발이득금 환수원칙등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5000년 역사이래 거주해온 주민의 이주와 부담이라는 면은 거의 존중되지 못해온바

기존에 국가가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 및 투자가 거의 미약했던 것을 미루어 이제라도 국민의 환경존중 의식을 제고하여 예산을 집중하여 기본적 근거를 마련한뒤 규제 및 기준을 어길 경우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인데, 국민의 선진의식과 국가의 기본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한채 일방적인 규제강화는 옳지 않다고 사료되어

청원 소개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회의에 부의시켜 대표 소개위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과 건의안을 듣고 의결을 거쳐 관계부처에 건의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